

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 : 김광수 의원 외 6명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2년 2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2년 2월 29일

## 3. 제안이유

-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## 4. 주요내용

- 당연직 위원 위촉 근거조항 삭제(안 제5조 제2항)
  - 보육시설연합회장, 보육정보센터장, 담당과장, 도의원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관련 조항 신설(안 제10조의2)
-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정책위원회 업무보고 의무 신설(안 제12조)
- 도지사의 취약보육 활성화 의무 부여 조항 신설(안 제20조)
- 관련 용어 등 조문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12조, 제14조, 제17조, 제20조~제26조)
  - “보육시설” ⇒ “어린이집”,
  - “보육시설종사자” ⇒ “보육교직원”
  -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 정비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○ 동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 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보육시설연합회장, 보육정보센터장, 담당과장, 도의원의 당연직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폭넓은 전문가의 참여를 가능토록 하였고,
-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관련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,
-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정책위원회 업무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보육정보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, 도지사의 취약보육 활성화 의무를 신설하였으며, 최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